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- 21호

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. 5. 30.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

(정일윤 의원 대표발의)

1. 제 안 이 유

「건강가정기본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. 주 요 내 용

- 가. 목적, 정의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지원기준, 금액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지원대상 및 방법, 신청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라.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마. 준용규정에 관한 규정 (안 제8조)

3. 참 고 자 료

가. 관련법령 : 『건강가정기본법』, 『청소년복지 지원법』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등 : 집행부 의견조회

라. 입법예고 : 2024. 5. 30. ~ 6 .4.(5일간)

마. 기 타

1) 제정 조례안 및 별지

2)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리용품”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.
2. “생리용품 이용권(바우처)”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기준) ① 지원대상자(이하 “대상자”라 한다)는 신청기준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.

1.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
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라. 그 밖에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.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한다.

② 생리용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용품 등 교부는 연2회(상·하반기)로 하며,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

않는다.

제4조(지원액) 생리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「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」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.

제5조(지원대상 및 방법) 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 이용권(바우처)으로 교부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신청) ① 생리용품 이용권(바우처)의 신청방법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환수조치)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부정사용 적발·신고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『건강가정기본법』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혹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□ 『청소년복지 지원법』

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,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·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0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, 제2항에 따른 건강·체력 기준의 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·범위, 방법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임실군 여성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